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1,636,155	9,349,085
일반회계	274,423,564	8,232,707
특별회계	37,212,591	1,116,378
기타특별회계	37,212,591	1,116,37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2,119	31,5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809,955	474,299
수질개선특별회계	9,653,900	289,617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37,000	7,11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88,020	266,641
의료보호특별회계	130,466	3,914
주차장특별회계	56,476	1,69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96,283	38,888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88,372	2,65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71,8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